

| 신청기관 : 사회투자지원재단

캐나다 퀘벡 주의 사회적경제법과 협동조합법 주요내용 분석 및 시사점

전용일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강의전담교수, 법학박사

I.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19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표면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이를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재벌 중심의 수출정책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분배와 고용 및 국제외환위기 등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와 위기상황에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세대 간, 지역 간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6년 OECD가 발표한 ‘일자리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국가 중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지수는 이스라엘, 미국, 터키에 이어 4위로 우리사회의 소득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⁰¹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하여 캐나다의 퀘벡 주와 같은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법을 의회차원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럽 및 캐나다 퀘벡 등 일부 국가들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이 등장하게 된 것은 2008년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주도의 경제체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의 역할

⁰¹ 매년 OECD가 발표하는 일자리 질 보고서(OECD Employment outlook)는 매년의 고용, 실업, 일자리, 소득 등의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의 고용 및 소득상황을 알려주는 보고서이다. 이중 소득불평등지수는 엣킨슨 지수를 활용하여 나타내며, 이스라엘(0.41), 미국(0.35), 터키(0.34)에 이어 대한민국(0.32)로 4위에 랭크되었다.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767> 기사 참조.(2018.9.2. 방문)

과 기능에 대해 점차 관심이 높아 졌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여러 국가들이 직면한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과는 달리 민간의 참여도 적극 권장함으로써 그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재정지출을 하지 않고서도 고용, 실업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일자리 및 소득 창출과 같은 여러 사회문제들을 다룸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유럽과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서 적극적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로도 사회적 경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⁰² 의회차원에서도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이라 부르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등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시도한 국가들 가운데 캐나다 퀘벡 주 사회적 경제 관련법-사회적경제법, 협동조합법-의 주요내용을 분석 하고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법제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 및 개정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퀘벡 주의 사회적경제법제 입법배경

1980년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흐름과 더불어 세계적 경제 불황은 퀘벡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내 실업률이 상승하고 공공부문의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가 축소되고, 경제에 대한 주정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공기업을 사유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의 상황에서 주정부, 노동운동, 시민사회, 협동조

⁰² 지난 2017.10.18.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8.7.3.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여기고 양극화, 고용불안,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합은 자신들의 활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재조정하게 되었다.⁰³

경기침체에 따른 광범위한 실업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퀘벡의 노동운동은 치열한 내부 논쟁을 통해 스스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협동조합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퀘벡의 노동운동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연방 및 주 정부와 협상 및 타협을 통해 세금감면을 받아 1983년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기금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길로 들어섰다.⁰⁴

퀘벡의 사회적경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1995년 설립된 사회적경제의 “샹티에(Chantier)”와 1940년에 설립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최고기구로 국가적 이슈를 홍보하고 정부와 협상을 이끌며, 중요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며 협동조합개발정책을 관리하는 “퀘벡 협력과 상호부조를 위한 위원회(Conseil québécois de la coopération et de la mutualité)”를 들 수 있다. 위의 두 곳은 퀘벡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끄는 양대 산맥으로 두 기관을 통해 얻은 성과는 실로 엄청나다.

이처럼 퀘벡 사회적경제는 크게 시민사회와 협동조합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주 정부 내 경제사회부, 지역고용부와 관계하면서 법적으로는 “협동조합법”과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해 규율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회적경제법(Social Economy Act)”이 2013년 3월에 제정되었다.⁰⁵

III. 퀘벡 주의 사회적 경제 법제 주요내용

1. 사회적경제법의 주요 내용

퀘벡 사회적경제법은 주석, 제1장 목표 및 적용, 제2장 장관의 역할 및 기능, 제3장 정부의 역할, 제4장 정부실천계획, 제5장 사회적 경제협력위원회, 제6장 개정 조항, 제7장

⁰³ 홍선기, 김태환, “캐나다 퀘벡의 Social Economy Act와 한국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비교”, 『법학논총』 Vol.32 No.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6, 170쪽.

⁰⁴ 김창진, “캐나다 퀘벡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협동조합네트』 통권 60호,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3, 90쪽

⁰⁵ 충남발전연구원, 『캐나다 퀘벡주 협동조합 조사보고서(안)』, CDI 해외연수자료집(2013), 2013, 24쪽.

경과규정 및 최종 조항 등 총 7개의 장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⁰⁶ 2013년 3월 19일에 의회에 상정되어 2013년 10월 10일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1) 전문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퀘벡 의회가 본 법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역사,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외 지원조직, 퀘벡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위상 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 ① 조합,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19세기 중반 이후 퀘벡 주와 그 준주의 발전, 거주 및 사회경제적 활력에 기여해 왔다.
- ② 사회적 경제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함께 집단을 구성한 국민의 헌신과 기업가적 추진력의 산물로서 열망을 고취하고 그 구성원과 공동체의 복지에 기여한다.
- ③ 사회적 경제기업은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동체 내에 힘을 집결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단체적 부의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
- ④ 사회적 경제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구조 및 운영방식에 반영되는 집단적 가치를 근거로 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 경제를 불러일으킨다.
- ⑤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지역 및 부문별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는 두 개의 거대 조직, 즉 사회적경제위원회(the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Chantier)와 퀘벡협동조합상호부조위원회(the Conseil québécois de la coopération et de la mutualité:CQCM) 내에 모여 있다.
- ⑥ 사회적 경제기업 외에 전문지식, 자원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조직이 해당분야에서 지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⑦ 사회적 경제 문제에 대한 퀘벡의 경험과 전문지식은 수많은 포럼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위의 7가지 사항을 언급하면서 본 법안이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⁰⁶ 현재 우리나라로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이 2016.8.17.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본 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장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제4장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제5장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6장 사회적 경제조직의 운영, 제7장 보칙, 부칙 등 7개의 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목표 및 적용

본 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은 다양한 활동부문과 모든 퀘벡의 영토에 있어서 퀘벡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사회적 경제의 특정한 기여를 승인하는 것이다. 이 법은 또한 사회적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정한다.”고 본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조에서는 본 법의 목표 3가지를 밝히고 있다. ① 사회경제적 발전의 지렛대로서 사회적 경제를 촉진한다. ② 정부조치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수립 및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지원한다. ③ 사회적 경제기업의 행정부 조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촉진시킨다. 제3조에서는 사회적 경제란 다음의 6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이 사회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하며, 그 활동은 재화나 용역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구성됨을 밝히고 6가지 운영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원칙 - 기업의 목적은 그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다.⁰⁷

제2원칙 - 기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문서에 대한 접근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the Act respecting Access to documents held by public bodies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hapter A-2.1)이 의미하는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한 대상이 아니다.

제3원칙 -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규칙은 그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지배구조를 규정한다.

제4원칙 - 기업은 경제적 실행가능성에 고무된다.

제5원칙 -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규칙은 그 활동으로 창출된 잉여소득의 배분을 금지

⁰⁷ 본 법 제3조 마지막 단락에는 “제1항의 목적상, 사회적 목적은 금전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 또는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목적으로 특히 그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복지 및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로 특징을 수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그 활동이 특히 재화나 용역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구성되고, 법인격이 부여된 협동조합, 공제조합 또는 조합이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이다.”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따르면,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동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조직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한 배당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우선적인 사용 ⑤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등 5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을 제3조 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 기업·법인·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하거나 각 구성원이 기업에서 수행한 거래에 비례하여 그 구성원 간에 잉여소득을 배분할 것을 규정한다.

제6원칙 –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규칙은, 그 해산의 경우에 기업의 잔존재산은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법인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제4조는 행정부의 해당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⁰⁸ 제5조는 사회경제위원회 및 케벡협동조합상호부조위원회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될 경우, 정부의 주요교섭담당기관임을 밝히고 있다.

(3) 장관의 역할 및 기능

제6조는 지방자치, 지역 및 국토부장관(the Minister of Municipal Affairs, Regions and Land Occupancy)의 5가지 역할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사회경제위원회(Chantier) 및 케벡협동조합상호부조위원회(CQCM)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the Minister of Finance and the Economy)과 공동으로 정부에 대해 케벡에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역할, ②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부 조치를 조정하는 역할, ③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나 프로그램 및 조치의 시행에 있어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 ④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규정된 기능과 행위를 이행함에 있어 행정부의 지원 역할, ⑤ 사회적 경제의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4) 정부의 역할⁰⁹

권한의 행사 및 책임의 이행에 있어서, 모든 장관은 그 행위와 제4조에 규정하는 소관 기관과 관련하여 조치 및 프로그램을 개신하고 기업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개발할 때에 해당 조치 및 프로그램을 고려함으로써 케벡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승인해야 한다. 게다가 관련된 경우에는 장관은 케벡과 국제적 수준에서 수행되는 사회적 경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7조는 규정하고 있다.

⁰⁸ 이 법에서 행정부란 정부부처 및 재정위원회 사무국, 케벡 투자청 및 케벡 주택공사, 정부가 지정하고 감사원법이 적용되는 기타 정부 기관을 가리킨다.

⁰⁹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의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5) 정부실천계획¹⁰

제8조는 정부의 실천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천계획은 장관이 사회경제위원회 및 쿼벡협동조합상호부조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개발하고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또한 장관은 실천계획의 사후조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 모든 실천계획은 2014년 4월 1일까지 채택되어야 함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실천계획은 그 규정하는 책무에 관한 보고체계와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행정부가 취한 기타 체계를 규정하며,¹¹ 정부는 매 5년마다 사회적 경제실천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단 2년의 범위 내에서 검토기간을 연기할 수 있음을 제8조와 제10조가 각각 규정하고 있다.

(6) 사회적 경제협력위원회¹²

사회적 경제의 주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관으로 사회적 경제협력위원회(the Panel of Social Economy Partners)를 두고, 사회적 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은 장관이 결정한다. 또한 위원회가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단의 이해와 관련된 특정한 주제를 논의할 경우, 장관은 집단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장관이 해당 주제에 대한 위원회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다른 자를 논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한다고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여성할당제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¹³

¹⁰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8조에서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¹¹ 이에 관해 장관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검토 18개월 전까지 실천계획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한다. 또한 해당보고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회에 상정되고, 의회가 개회 중이 아닌 경우에는 개회 후 30일 이내에 상정된다고 제9조 하단에서 정하고 있다.

¹²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15조는 국가의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민·관 협치에 의한 공동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등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총괄부서로서 정책조정기능과 예산확보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16조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¹³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mposition of the Panel must also tend toward gender parity.”(밑줄 첨가)

(7) 경과규정 및 최종조항

본 장에서 제14조는 우선 지방자치, 지역 및 국토부 장관이 이 법의 관리에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1월 28일 의회의 주문에 따라,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자치, 지역 및 국토부장의 기능은 경제, 과학, 혁신 장관에게 위임되었다.¹⁴ 최초 사회적 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 시한을 2014년 4월 10일로 명시하였으며(제15조), 제16조는 2020년 10월 10일까지 및 그 후 매 10년마다 이 법의 시행에 관해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장관에게 부과하고 있다.

2. 협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퀘벡 협동조합법(Cooperatives Act-Chapter C-67.2)은 8개의 Title, 총 3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Title I은 협동조합에 적용가능 한 규정(PROVISIONS APPLICABLE TO COOPERATIVES)이라는 제목 하에 24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itle II는 특정협동조합에 관한 특별조항(SPECIAL PROVISIONS ON CERTAIN COOPERATIVES)이라는 제목 하에 7개의 장(Chapter), Title III은 연합회(FEDERATIONS)라는 제목 하에 4개의 장(Chapter)으로 이루어져 있다. Title IV 연맹에 관한 특별조항(SPECIAL PROVISIONS ON CONFEDERATIONS), Title V 규정(REGULATIONS), Title VI 벌칙조항(PENAL PROVISIONS)은 별도 장(Chapter) 없이 조문이 구성되어 있다. Title VII은 지속(CONTINUANCES)이라는 제목 하에 4개의 장(Chapter)로 이루어져 있고, 끝으로 Title VIII은 기타 및 과도기 규정(MISCELLANEOUS AND TRANSITIONAL PROVISIONS)이라는 제목 하에 별도의 장(Chapter) 없이 구성되어 있다. 조문의 내용과 양이 방대하고, 우리에게는 생소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규정들도 많아 본 법의 모든 규정을 다루기 어려워 Title 별로 중요한 내용만 다루기로 한다. 특히, 전체 규정 중 Title I은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규정들’이란 제목>Title) 하에 24개 장(Chapter), 193개의 조문(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330개의 조문 중 60%이상

¹⁴ 이 법 제14조 “note”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The functions of the Minister of Municipal Affairs, Regions and Land Occupancy provided for in this Act are entrusted to the Minister of Economy, Science and Innovation. Order in Council 31–2016 dated 28 January 2016, (2016) 148 G.O. 2 (French), 1256.”
<http://legisquebec.gouv.qc.ca/en/showdoc/cs/E-1.1.1> (2018.8.24. 방문)

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방대하다. 따라서 주로 Title 1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내용 분석을 진행하고, 나머지 Title에서는 우리에게 생소하거나 특이한 규정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협동조합에 적용 가능한 규정: Title I

1) 통칙

우선 퀘벡의 입법권 하에 있는 공동체는 이 제목에 따라 협동조합이 구성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투자 또는 벤처 목적으로 또는 금융 서비스 협동조합(Chapter-67.3)법에서 제 공되는 목적으로 신탁회사 및 저축회사(chapter S-29.01)법에 의해 규율되는 신탁회사 또는 저축회사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어떠한 협동조합도 이 법에 따르는 협동조합을 구 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¹⁵ 즉 금융관련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 근거법을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조는 협동조합의 행동 규칙(The rules of cooperative action) 8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협동조합법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의 성격을 띤다.¹⁶

협동조합의 구성 전 조합의 이익을 위해 행한 사람의 행위는 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되며, 이 행위는 협동조합 구성 후 조합원총회를 통해 비준을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협동조합으로 승계된다.¹⁷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인원으로 5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목할 점은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설립자가 될 수 있는데, 그 가능나이로 만 14세를 제시하고 있다.¹⁸

¹⁵ section 2.

¹⁶ section 4, 8가지 행동규칙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며, 조합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 (2) 보유 주식의 수나 대리인 투표에 관계없이, 그 어떤 회원도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 (3) 자본 주식에 대한 이자지급은 제한되어야 한다.
- (4) 예비금이 설정되어야 한다.
- (5) 경상수지 흑자 또는 운영잉여금은 조합원 간에 행해지는 사업과 비례하여 적립금 및 조합원에 배분하거나 법률에 따라 기타 부대 목적에 배분해야 한다.
- (6) 조합원 간, 조합원과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과 다른 협동조합 간 협력이 촉진되어야 한다.
- (7) 협력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조합원, 이사, 임원 및 직원의 교육을 촉진하고, 협력의 성격과 장점을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 (8) 협동조합은 공동체의 발전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¹⁷ section 5, 6.

¹⁸ section 7, 8.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정관에는 협동조합의 이름, 설립목적, 설립자의 이름과 거주지 및 설립 법인의 이름 및 소재지가 명기되어야 하며, 이를 갖춘 정관은 본 법이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서류를 더하여 경제발전혁신수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 이하 MDEIE) 장관에게 보내진다. 이를 받은 장관은 정관과 신청서 사본을 함께 조합구성에 대한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통고하는 퀘벡협동조합상호부조원회(Conseil Québécois de la Coopération et de la mutualité : CQCM)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발송된 지 15일 이내에 또는 Conseil이 응답을 하자마자, 장관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될 경우, 협동조합 구성을 인가한다.¹⁹

협동조합의 인가 후, 조합의 명칭이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²⁰ 변경을 명령할 수 있고, 주어진 기간 내 명칭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직권으로 명칭변경을 할 수 있다.²¹

협동조합의 권한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이 조합원 또는 보조회원에게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유가 증권에 제공되는 생산물의 가격 또는 서비스의 일부를 지불하는 경우 그러한 농산물 또는 서비스의 가격의 최대 10%를 지급 할 수 있으며,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판매하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계좌, 또는 그의 주식에 만기가 되거나 상환하는 대금을 판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²² 협동조합 본사 소재지와 관련하여 법은 협동조합 본사의 소재지는 반드시 퀘벡에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²³

2) 자본금 및 주식

제8장에서는 협동조합의 자본금(CAPITAL STOCK OF A COOPERATIVE)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출자금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종류와 운영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자본금의 종류로 보통주식(common shares), 우선주식(preferred shares), 참여 우선주식(participating preferred shares) 3가지를 들고 있다.²⁴ 또한 조합원은 법에서

¹⁹ section 7–13.

²⁰ 관련법은 “기업의 법적공시에 관한 법”(the Act respecting the legal publicity of enterprises (chapter P-44.1) 제17조를 가리킨다.

²¹ section 16은 조합 명칭에 반드시 다음 어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ooperative”, “cooperation” or “coop” ; section 17, 18.

²² section 27.

²³ section 33. “The head office of a cooperative must at all times be located in Québec.”

²⁴ section 37.

정한 최소한의 보통주 또는 보통주 및 우선주를 보유해야 하는데, 그러한 주식을 적격주(qualifying shares)라고 한다. 적격 주식의 수는 조합원이 사용하려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적격 주식의 지불 조건은 내규에 의해 결정된다.²⁵

보통주는 등록되며,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전될 수 없다. 보통주 1주의 가격은 \$10이며,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²⁶

이사회는 내규에 의해 승인된 경우, 모든 개인 또는 제휴사에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의 발행 양, 주식에 첨부된 권리와 제약사항, 그리고 환매, 상환 또는 이전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3년 만기 전에 보유자에게 주식의 상환이나 상환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어떤 우선주도 보유자가 총회의 통지를 받거나, 그러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투표하거나, 협동조합의 어떤 직책에 대한 자격도 부여되지 않는다.²⁷

이사회는 내규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참여 우선주를 조합의 회원 또는 보조 구성원이 아닌 개인 또는 파트너 관계에 있는 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참여 우선주의 인증서(증권)를 발행해야 하며, 인증서(증권)는 우선주의 금액, 부여되는 권리와 제약사항, 주식의 환매, 상환, 양도 조건, 또는 주식의 특성을 결정하는 내규의 사본을 동반해야 한다. 참여 우선주는 주주들에게 총회에 소집되고 참석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지만 발언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참여 우선주는 보유자가 주식에 대해 지급한 금액의 최대 25%까지 연간 이자를 받을 권리를 갖게 할 수 있다. 이자는 영업흑자 또는 초과이익의 최대 25%까지 조합의 영업흑자 또는 초과이익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²⁸

3) 조합원 제도

앞서 미성년자도 만 14세 이상이면 설립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자격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만 14세 이상이면 미성년자여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²⁹ 한편, 일종의 준조합원 제도와 비슷한데, 보조조합원 제도를 두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조합은 내규에 의해 하나 이상의 보조 조합원 등급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

²⁵ section 38.3

²⁶ section 39–42.

²⁷ section 46–49.

²⁸ section 49.1–49.4

²⁹ section 51.1

원 가입 조건과 그 권리와 의무를 결정할 수 있다. 내규는 보조 조합원의 등급을 만드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나 제휴사는 그 개인이나 제휴사가 실제로 협동 조합의 서비스 이용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 한 보조 조합원으로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보조 조합원은 투표권이 없고 직책을 맡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³⁰ 조합원은 이사회에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그만 둘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동의가 없다면, 조합을 통해 부동산이나 서비스를 제공, 판매, 매입 또는 수취하기 위해 수행한 계약 기간 동안 그 어떤 조합원도 사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조합원을 일시 자격정지 시키거나 퇴출할 수 있다. ① 그가 협동조합의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② 더 이상 실제로 협동조합 서비스 이용자가 될 수 없는 경우, ③ 그가 협동조합의 내규를 따르지 않는 경우, ④ 그가 내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적격 주식에 대해 비용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⑤ 적격한 주식에서 제외되는 경우, ⑥ 그가 협동조합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⑦ 회계연도 1년간 조합이 정한 협동조합으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한 경우, ⑧ 협동조합과 경쟁하는 활동을 할 경우를 들고 있다.³¹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25명 미만일 경우 1년 동안 이사를 선임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합원의 9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업무를 그들이 이사인 것처럼 관리하여야 하며, 이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무를 지는 것으로 간주 된다.³²

조합원총회와 관련하여, 연차총회든 특별회의든 조합원들은 총회를 구성하게 된다. 총회에서의 투표권과 관련하여 대리투표를 인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와 달리, 1년 이상 함께 거주했을 경우 법률상이 아닌 사실인 배우자도 포함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성 배우자가 아닌 동성 배우자도 배우자로 포함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³³

³⁰ section 52.

³¹ section 55–57.

³² section 61–62.

³³ section 69. ~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spouses are persons who are married to, or in a civil union with, each other and cohabit or persons, of opposite sex or of the same sex, who have been living together in a de facto union for at least one year.(밀줄 첨가) 참고로,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 제23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벡의 협동조합법상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에 대한 대리인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로 한정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상 의결권 및 선거권의 대리인 범위가 보다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특별회의와 관련하여 이사회, 협동조합의 대표(president) 또는 협동조합이 회원인 연합회(federation) 이사회는 그가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 할 때마다 특별 회의가 개최되도록 할 수 있다. 이사회는 또 조합원이 2,000명 이상인 경우 500명의 회원이 요청하거나, 조합원이 2,000명 미만인 경우 4분의 1의 회원이 요청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요청서는 특별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할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협동조합의 사무국장(secretary)은 각 경우에 특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³⁴ 한편, 특별 회의에서 그것을 소집하는 통지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어떤 것도 고려되거나 결정될 수 없으며, 요구서에 구체화된 사항은 총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의 적시와 함께, 통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³⁵

4) 이사 및 이사회

조합의 이사회는 3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이사의 수는 내규(by-law)로 정해진다. 이사가 되는 자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우선, 금융 서비스 협동조합(Chapter-67.3)에 관한 법률의 의미 하에, 이 법의 의미 내에서 금융 서비스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또는 연맹이 제83조의 의미 하의 단체인 경우, 금융 서비스 협동조합의 대표자, 연맹 또는 연합회의 대표자는 이사가 될 수 있다.³⁶ 여기서 적시된 제83조는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조합은 내규로 조합원을 단체별(group)로 나누거나 또는 그 관할지역(territory)을 구획(district)으로 나누거나 아님 둘 다로(group and district) 나눌 수 있으며, 각 단체나 구획, 또는 둘 다에게 특정수의 이사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조합에 관한 법(Chapter-67.3)에 의해 규율되는 금융 서비스 조합이나 이 법에 의해 규율되는 연합회 또는 연맹은 비록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단체(group)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본 조에 따라 ‘단체(group)’가 될 경우 이사가 될 자격을 갖게 된다. 두 번째로, 협동조합의 직원(employee)은 협동조합의 직원(노동자)으로 구성된 직원 협동조합(work cooperative), 주식보유 노동자 협동조합(shareholding workers cooperative) 또는 연대 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을

³⁴ section 77.

³⁵ section 79.

³⁶ the paragraph 2 of section 81.

제외하고 이사로 선출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³⁷ 셋째로, 미성년자(만 14세)도 자신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의 이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⁸ 미성년자는 이 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설립자, 조합원, 이사 직(office)까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내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1년이며, 이 경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의 임기는 2년 또는 3년이다. 이러한 경우, 내규에 의해 결정되는 순환 방식에 따라 매년 교체된다.³⁹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다음의 두 경우를 제외하고, ①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요청한 경우, ② 회의 휴회 또는 폐회 전에, 그가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통보한 경우 회의 참석 중 통과된 모든 결의에 동의하거나 모든 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⁴⁰ 같은 맥락에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는 어떠한 결의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거나 또는 그가 없는 동안 취하는 어떤 조치에도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⁴¹

이사에 관한 특별규정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이사들은 어떤 보수도 받을 자격이 없다. 다만,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정당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총회에서 정한 출석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는 이사회의 명령에 따라 이사회 회의 외로 협동조합을 대표할 경우, 이사회에는 해당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⁴² 둘째, 협동조합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또는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위임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제 3자에 의해 기소된 한 이사를 변호해야 한다. 조합은 해당 행위나 누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사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잘못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나 형사소송의 경우, 조합은 해당 이사의 행위가 법에 부합한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의 경비만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는 조합은 그가 자유롭게 되거나 무죄를 선고받거나, 또는 형사소송 절차가 취하 또는 파기된 경우에, 그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조합의 이사에 관한 두

³⁷ the paragraph 3 of section 81.

³⁸ section 81.1.

³⁹ section 84.

⁴⁰ section 97.

⁴¹ section 98.

⁴² section 102.

터운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⁴³ 셋째, 조합원으로서의 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이외에 협동조합의 이익과 충돌하는 개인적 이익을 갖는 기업, 계약 또는 경제적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이사는 그 직을 걸고 자신의 이익을 공개해야하며, 그의 이익과 관련된 기업, 계약 또는 경제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투표도 할 수 없으며, 그 문제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사회 심의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그는 심의 기간 동안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계약 또는 경제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해 회의를 떠나야 한다.⁴⁴ 내규로 이사회가 최소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될 경우, 이사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 위원의 수는 이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고,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 회계 연도의 최소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진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만약 내규에 의해 승인된다면, 이사로 구성된 다른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그들의 수임자를 정할 수 있으며, 특정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을 가진다.⁴⁵

5) 협동조합의 활동

협동조합의 정관을 개정하려면 총회에서 내규를 채택해야 한다. 정관을 수정하는 내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소집된 연차총회나 특별회의에서 출석한 조합원이나 대표가 표결의 3분의 2에 의해 채택되어야 하며, 내규는 이사들 중 한 사람에게 수정 정관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사가 서명한 정관 개정안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⁴⁶

조합원들과 협동조합 활동은 이익을 얻는 수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조합은 정부 규정에 의해 결정된 비율에 따라 회원들과 함께 전체 사업의 일정 부분을 진행해야 한다. 연대조합의 경우, 이 비율은 조합의 이용자 및 조합의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계산한다. 협동조합의 총 사업에는 조합의 자회사나 공동 소유의 재산 중 일부인 부동산을 이전하는 신탁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연차보고서에 조합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비율을 명시하

⁴³ section 103.

⁴⁴ section 106.

⁴⁵ section 107-108.1.

⁴⁶ section 118-120.

지 않는 경우, 해당 비율은 정부규정에 의해 규정된 비율보다 적은 것으로 간주된다.⁴⁷ 한편, 회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회는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⁴⁸ ① 협동조합의 이름 및 소재지 및 그 밖의 다른 명칭, ② 임원과 이사의 이름, ③ 그러한 경우, 조합원들이 해당 연도에 이사들을 선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언급, ④ 조합원 및 연합 조합원의 수(있는 경우), ⑤ 지난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⑥ 주식의 상환 요청 및 예상 주식의 상환을 포함한 자본 주식의 명세서, ⑦ 감사인 보고서, ⑧ 연례회의 날짜, ⑨ 조합이 고용한 인원수(있는 경우), ⑩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이 소속된 연합회의 이름, ⑪ 기타 내규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6) 감사

연차총회에서 조합은 다음 연차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를 임명한다. 감사는 전문가 법규(chapter C-26)에 언급된 전문 회계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정부는 규정에 의해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협동조합에 대해 전문가 법규에 따른 전문 회계사를 고용해야하는 의무로부터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⁴⁹ 연차총회에서 감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장관은 조합원 3명 또는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연합회의 신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⁵⁰ 조합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은 조합의 감사로 임명될 수 없다.⁵¹

7) 잉여 및 잉여의 배분

제20장(Chapter 20)은 영업 잉여(OPERATING SURPLUS), 잉여 수입(SURPLUS EARNINGS) 및 예비비(RESERVE)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총회에서 조합원은 이사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한 후 이전 회계 연도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따라, 영업잉여 또는 잉여수입의 참여로 배분된 이자를 포함하여 우선주와 참여우선주에 배당된 이자를 공제한 후, 영업잉여 또는 잉여수입의 금액을 예비비 및 조합원과 보조

⁴⁷ section 128–128.2.

⁴⁸ section 132.

⁴⁹ section 135.

⁵⁰ section 136. 한편, 제136조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감사를 제외한 모든 감사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소집되는 특별 회의에서 해임 될 수 있다. section 136.1.

⁵¹ section 138.

회원의 리베이트⁵²에 배당한다.⁵³ 예비비는 적자공제 및 매년 예비금으로 지급되는 잉여수입과 양도된 총액의 공제 후, 남은 총합으로 구성된다.⁵⁴ 한편, 조합원은 영업잉여 또는 초과이익의 최소 10%를 예비금에 할당해야 하며, 또한 그들은 영업잉여 또는 잉여이익의 최소 10%의 추가 비율을 주식 형태로 예비금이나 리베이트로 배분해야 한다. 조합은 지분이 조합 부채의 최소 40%가 될 때까지 이러한 총 배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⁵⁵

생산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또는 주식보유 노동자 협동조합(shareholding workers cooperatives)은 조합의 서비스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내규로 “강화예비비(enhancement reserve)”로 알려진 예비비를 구성할 수 있다.⁵⁶ 강화예비비를 구성하는 조합의 이사회는 적립금이 플러스 잔액을 표시할 정도까지 그리고 제2항에 규정한 한도(조합원이나 보조회원이 행한 사업의 비율) 내에서 조합원 또는 보조 조합원에게 배당될 수 없는 영업잉여 또는 초과수익을 강화 예비비 부분으로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또는 해당 조합이 주식 또는 다른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제휴사의 조합원이나 보조회원이 행한 사업의 비율에 상응하는 영업잉여 또는 잉여수입이 강화 예비비로 할당될 수 있다. 모든 적자는 우선 강화 예비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⁵⁷ 조합이 해산되면, 그 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익을 얻는 주식보유 노동자 협동조합(shareholding workers cooperatives)은, 해산 투표가 결정되기 이전 회계년도 5년 동안, 조합원 및 보조 회원과 협동조합이 수행 한 사업의 평균 비율과 동등한 이익의 일부를 강화 예비금으로 지불 할 수 있다.⁵⁸

8) 합병

제21장(Chapter 21)은 합병(AMALGAMATION)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합병은 일반

⁵² 일단 지급받은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한다. 원래는 상품의 거래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불하는 영업이윤 배분으로 제조업체가 판로를 유지할 목적으로 생겼다. Daum 백과, ‘rebate’ 검색.

⁵³ section 143.

⁵⁴ section 145.

⁵⁵ the paragraph 1, 2 of section 146. 한편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영업잉여’와 ‘잉여수입’은 우선주 및 참여우선주에 배당된 이자(영업잉여 또는 잉여수입에 참여로서 할당된 이자를 포함하여)를 공제한 후, 조합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잉여수입 또는 초과이익을 나타낸다. the paragraph 3 of section 146.

⁵⁶ section 149.1.

⁵⁷ section 149.3.

⁵⁸ section 149.5.

합병(ORDINARY AMALGAMATION)과 흡수합병(AMALGAMATION BY ABSORPTION) 두 가지를 나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일반합병을 살펴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협동조합이 합병 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다음의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합병으로 인한 협동조합이 만기가 되면 부채를 상환 할 수 없는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합병으로 인한 협동조합의 자산의 장부 가액이 부채의 합계와 납입 자본금의 가치를 나타내는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이다.⁵⁹ 그러나 앞의 두 가지 합병불가 사유에도 불구하고, 모든 채권자가 합병에 동의한다면,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은 합병으로 인한 협동조합의 자산의 장부 가액이 부채의 합계액과 납입 자본금의 가치를 나타내는 합계액보다 적더라도 합병 할 수 있다.⁶⁰ 합병을 제안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의 조건과 더불어 다음을 나타내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⁶¹

- ① 합병으로 인한 협동조합의 이름, 협동조합의 목적 그리고 제10조에 언급된 조항(정관은 이 법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 이외에, 내규에 정하도록 법에 의해 허용되는 그 밖의 어떠한 조항도 제정할 수 있다.)
- ② 최초 이사들의 이름과 거주지
- ③ 적용가능 한 경우, 후속 이사의 선정 방식
- ④ 합병으로 인한 조합의 각 주식의 수, 각 주식의 가격, 보통주, 우선주, 기타 증권으로 전환되는 양식
- ⑤ 협동조합 중 한곳의 주식이 합병으로 인한 협동조합의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협동조합의 주식 외에 그런 주식의 보유자에 의해 받게 될 지급의 형식 또는 지급액
- ⑥ 합병 결과 발생하는 협동조합의 주식 분수 대신에 지급 할 금액 또는 기타 지불 방법
- ⑦ 해당 날짜가 승인 날짜와 다른 경우, 합병이 발효되는 날짜
- ⑧ 농업 목적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협동조합은 이 법의 TitleII 제1장 제2절(AGRICULTURAL COOPERATIVES)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

⁵⁹ section 154.

⁶⁰ section 154.1.

⁶¹ section 155.

- ⑨ 그러한 경우에는 합병을 완료하고 합병으로 인한 조합의 조직 및 관리, 합병한 협동조합의 영업이익 또는 초과 수익의 배분 결정을 위한 회의의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

그리고, 합병 정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⁶²

- ① 통합 정관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이사가 서명한 협동조합 합병 신청서
- ② 합병 동의서
- ③ 거주지 표시 통지
- ④ 특별 회의에서 내규가 채택되었다는 증명
- ⑤ 합병으로 인한 협동조합이 제154제 및 제154.1조의 요건을 충족함(협동조합의 합병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특별 총회에서 임명된 감사가 서명한 증명
- ⑥ 청원서 심사를 위해 장관이 요구하는 기타 문서 또는 정보

합병 정관에 나타난 효력이 발생한 날짜부터, 합병한 조합은 하나이며 같은 협동조합으로 계속 존재해 왔다. 그 결과 통합한 협동조합은 통합된 협동조합의 권리를 획득하고 이들의 의무를 인수한다. 합병 협동조합에 대한 또는 진행 중인 절차(소송)들은 별도소송을 계속하지 않고도 계속 될 수 있다.⁶³

각 조합이 유사하거나 관련된 목적을 추구하며 흡수되는 각 조합의 구성원의 수 또는 지난 회계 연도에 수행한 사업의 수가 구성원 수 또는 사업의 양의 2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을 흡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⁴ 흡수합병에 관한 규정 역시 일반 합병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과정과 내용을 담고 있다.⁶⁵

위에서 언급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간의 합병 외에, 협동조합과 기업(business corporation)간의 합병,⁶⁶ 협동조합과 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legal person)과의 합병⁶⁷도 언급하고 있다.

⁶² section 160.

⁶³ section 163.

⁶⁴ section 164.

⁶⁵ section 165–172.

⁶⁶ section 173–176. 여기서의 기업은 기업법(Business Corporations Act (chapter S-31.1))의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⁶⁷ section 176.1, 176.2 여기서의 법인은 회사법 제3부(Part III of the Companies Act (chapter C - 38))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인(자본금을 가지지 않거나, 특허증으로 구성되거나 계속되는 법인 또는 단체)을 가리킨다.

장관은 자신의 행동으로 또는 조합원의 신청, 케벡 협동조합 상호부조위원회(CQCM)의 신청, 해당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 있는 연합회의 이사회의 신청으로 협동조합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를 지명할 수 있다. 검사관의 감사보고서에 따라 장관은 자신이 적절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권고하기 위해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합이 자신의 권고안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장관은 조합이 자신의 권고를 따르도록 명령하거나 편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⁶⁸

9) 해산 및 해산명령

제23장(Chapter 23)은 협동조합의 해산(WINDING-UP)을 다루고 있다. 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위해 소집된 특별 회의에서 참석한 조합원이나 대표들에 의해 투표된 3/4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에 의해 조합의 사무를 종결시키고 해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 협동조합은 단지 그의 사무를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하고 운영된다. 해산 결정을 내리는 즉시, 특별 회의는 회의에 참석하는 조합원이나 대표들에 의해 채택된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따라, 조합의 재산권을 즉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1인 또는 3인의 청산인을 임명해야 한다.⁶⁹ 청산인은 우선 조합의 부채와 청산 비용을 부담하며, 둘째, 내규나 결의안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주식에 지급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상환 할 수 없는 주식을 대표하는 금액은 이해 관계자의 이름과 최종 주소를 나타내는 금액과 수입 총액이 이관된 날짜와 함께 미 청구 재산 법(the Unclaimed Property Act(chapter B-5.1))이 총액에 적용되어 재정부장관에게 이관된다. 또한 생산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또는 주식 소유 조합의 내규가 제149.2조 제2항의 목적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강화 예비비에 남은 잔액은 해산이 투표로 가결되기 전 5개 회계연도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보조조합원이었던 개인 또는 제휴사에게 해당 개인 또는 제휴사에 의해 조합의 내규로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조합이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보유했던 협동조합, 기업 또는 제휴사가 행한 사업비율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일단 그러한 지불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금액이 이전되면, 자산의 잔액은 투표의 과반에 의

⁶⁸ section 180.

⁶⁹ section 181.

해 채택된 결의안의 방식으로 조합원 회의에 의해 조합, 연합회, 연맹 또는 퀘벡 협동조합 상호부조위원회(CQCM)에 이전된다.⁷⁰

자산이 25,000달러 이하인 조합은 청산인 임명이 면제된다. 이 경우 이사회는 협동 조합 해산을 목적으로 자산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위한 특별회의에 제출한다. 특별 회의는 자산 처분계획을 수용할 수 있으며, 회원이나 대표들이 표결하는 투표의 3/4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에 의해 협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다. 이를 간단해산(SIMPLIFIED WINDING-UP) 제도라 한다. 이 경우, 이사는 청산인에게 위임된 업무를 인수하고, 협동 조합의 자산 처분 방식을 기술하는 보고서와 함께 장관에게 결의에 대한 통지를 보내야 한다.⁷¹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⁷²

- ① 회원 수는 제7조(협동조합 설립자의 수 5인) 또는 제223.1조(직원 협동조합 설립자 수 3인)에서 언급한 최소수보다 작아진 경우
- ② 규정된 기간 이내에 조합원의 연례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규정된 기간 이내에 연간 보고서 사본을 장관에게 발송하지 않는 경우
- ④ 제185.5조에 언급한 준수 프로그램⁷³이 제188조에 명시된 시간⁷⁴ 이내에 만들어 지지 않거나 실행되지 않은 경우

해산된 협동조합의 자산 잔액은 퀘벡 협동조합 상호부조위원회(CQCM)에 이전된다.⁷⁵

(2) 특정 협동조합에 관한 특별 조항 : Title II

Title II에서는 특정 형태의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 협동조합(Producers Cooperatives), 소비자 협동조합(Consumer Cooperatives), 직원 협동조합(Work Cooperatives), 주식보유 노동

⁷⁰ section 185.

⁷¹ section 185.2-185.4.

⁷² section 186.

⁷³ section 185.5. 장관은 연차보고서를 검토한 후, 조합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면, 이사회가 특정 시간 내에 장관의 권고사항에 따라 협동조합 준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은 또한 이사회가 협동조합에 제출된 권고 사항, 준수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시행 보고서를 생산 후 연례 회의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⁷⁴ section 188. ~ 만일 조합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협동조합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⁷⁵ section 192.

자 협동조합(Shareholding Workers Cooperatives) 끝으로 연대 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이 그것이다.

1) 생산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생산자인 회원에게 전문적인 관행이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생산자란 개인 또는 제휴사의 주요 전문직 또는 사업 수입인 생계비 또는 직업 또는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직업이나 사업체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또는 제휴사라고 정의내리고 있다.⁷⁶ 본 법에서는 생산자협동조합의 모델로 농업협동조합(Agricultural Cooperatives)을 들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이란 농업 활동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과 관련된 주요 대상이 그러한 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마케팅, 취급 및 운송과 관련이 있는 협동조합으로 정의내리고 있다.⁷⁷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자이어야 하며, 설립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내규에 따라 필요한 적격주식을 구독하고 지불하고, 협동조합의 내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설립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⁸ 원래 농업협동조합법이 별도로 존재했으나, 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과거에 존재하던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시행중인 협동조합법으로 대체되었다.⁷⁹

본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농업협동조합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은 일단 일반협동조합을 규율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적용되며,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⁸⁰ 경제사업분야 및 금융사업분야 각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금융사업지주회사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들 두 지주회사가운데, 농협경제지

⁷⁶ section 193.1,193.2.

⁷⁷ section 194.

⁷⁸ section 200.

⁷⁹ 협동조합법이 1982년 제정되기 전에, 농업협동조합법(the Act respecting cooperative agricultural associations (chapter S-24))이 존재했으나, 본 법이 제정되면서 농업협동조합법은 1983.12.21. 폐지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퀘벡 협동조합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⁸⁰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주회사는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⁸¹ 금융사업지주 회사는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⁸² 즉 캐나다의 농업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 조직체로서의 협동조합이지만, 우리나라의 농업협동조합은 명칭은 협동조합이지만 사실상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Consumer cooperative)은 협동조합으로서 회원들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이다.⁸³ 종류로는 주택 협동조합(Housing Cooperatives), 학생 협동조합(Students' Cooperatives) 두 협동조합이 규정되어 있다.

주택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택 또는 주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주요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이다.⁸⁴ 주택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임대하는 주택은 내규에 의거하여 주거 단위당 2명의 조합원까지 허용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와 조합 운영에 관한 비교적 세부적인 규정들을 다루고 있다.⁸⁵

학생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은 영구적인 사업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이 되고, 교육 기관은 협동조합의 회원이 될 수도 있다. 교육 기관이 교육법 (Education Act (chapter I-13.3))에 적용되는 학교, 직업 훈련 센터 또는 성인 교육 센터인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⁸⁶ 학생 협동조합은 적어도 하나의 교육 기관에 본사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협동조합 구성 신청서에는 반드시 협동조합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기관의 서면 진술서와 함께 교육 기관의 시설에 본사 및 사업장을 가질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⁸⁷

⁸¹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제3항.

⁸²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제4항.

⁸³ section 219.1.

⁸⁴ section 220.

⁸⁵ section 221-221.2.10.

⁸⁶ section 221.3.

⁸⁷ section 221.4.

3) 직원(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자(직원)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조합 활동의 규칙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서’ 자연인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조합원 및 보조 조합원에게 업무(work)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조합이다.⁸⁸ 일반적 형태의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5명의 발기인(founder)을 요구하지만, 노동자(직원)협동조합은 그 발기인(founder)의 최소 요구인원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다.⁸⁹ 또한 협동조합은 내규에 따라 모든 노동자의 조합가입허가(admission)를 18개월 이하의 기간 안에 250일 이하의 시험 기간(trial period)으로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노동자는 보조 회원의 자격이다.⁹⁰ 시범 기간 종료 후 30일이 끝날 때 협동조합에 고용상태에 있는 시험대상 노동자는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된다.⁹¹

4) 주식보유 노동자 협동조합

주식보유 노동자 협동조합(Shareholding Workers Cooperatives)⁹²은 고용한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할 목적으로 자연인으로만 구성된 협동조합이며, 해당 사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조합원 및 보조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은 조합원 및 보조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 법인의 주주가 되도록 하며 제3조의 의미 내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⁹³ 협동조합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과 협동조합의 내규에 명시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권리가 있다.⁹⁴ 협동조합이 투표 및 참여 주식을 취득하는 비용은 사업 법인에서 취득한 주식의 총 비용의 30%를 초과해

⁸⁸ section 222.

⁸⁹ section 223.1.

⁹⁰ section 224.2.

⁹¹ section 224.2.1.

⁹² 주식보유 노동자 협동조합은 쿠데의 고유한 협동조합으로 전체 50개 정도 있다. 기관이나 단체 자체가 협동조합은 아니고 내용이 협동조합이다. 노동자 주주가 협동조합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형태의 노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러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결성한 이유는 일반적인 노조와 달리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경영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모든 회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동의를 해야 한다. 2016 서울 사회적경제 전략기획단 연수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12, 141쪽.

⁹³ section 225, 한편 이 법 제3조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이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요구가 공통적인 사람이나 제휴사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력 행동 규칙에 따라 기업의 영위를 위해 연합한 법인이다.”

⁹⁴ section 225.4.

야 하고, 사업 법인의 주주는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조직 회의를 개최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창립자가 될 수 없으며, 사업 법인의 투표권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주주가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⁹⁵

5) 연대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⁹⁶은 다음 범주의 구성원 중 최소한 두 가지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① 사용자 조합원, 즉 생산자 또는 소비자로서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자인 개인 또는 제휴사, ② 노동자 조합원, 즉 협동조합의 근로자인 자연인, ③ 협조 구성원, 즉 협동조합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 또는 제휴사를 들 수 있다.⁹⁷

(3) 연합회 : Title III⁹⁸

협동조합을 조합원으로 하는 연합체를 말 그대로 협동조합 연합회(Federation)라고 한다. 그리고 Title I(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규정들)에 적용되는 규정이,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여, 상당수 연합회에 그대로 적용된다. 연합회의 설립자 또는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협동조합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정관은 제9조와 제10조에서 언급된 세부 사항에 더하여 연합회가 조합원 모집 할 수 있는 영역(territory)을 포함해야 한다. 그 외에 연합회의 권한, 총회, 이사회 등은 Title I의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⁹⁵ section 225.2, 225.3.

⁹⁶ 우리나라에서 연대협동조합은 보통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부른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소비자 또는 구매사업자, 직원, 생산자 또는 자재공급자, 후원자 중 두 그룹 이상이 함께 조합원이 되는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내 교육생산·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서 생산자조합원(교사), 소비자조합원, 직원조합원, 후원자조합원, 자원봉사조합원이 조합원이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직원겸직조항(법44조)과 조합원 아닌 자의 사업이용 제한 조항(시행령 9조)이 있는 법체계 하에서는 실제로 이사회까지 둘 이상의 그룹으로 구성될 수 있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다음의 3가지 경우뿐이다. ① 직원협동조합중심의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서 직원이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고, 전체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이면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조합원과 임원으로 소수 참여하는 협동조합, ② 소비자조합원과 생산자조합원으로 구성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지역 농산물의 생산자와 믿을 수 있는 안전 식품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만나 만든 협동조합, ③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하기 위해 생산자, 소비자, 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그것이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검색(2018.9.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ejlaw24&logNo=220656621441>

⁹⁷ section 226.1.

⁹⁸ section 227-240.1.

(4) 연맹에 관한 특별규정: Title IV⁹⁹

장관은 퀘벡 협동조합 상호부조위원회(CQCM)에 연맹 구성을 위한 신청서, 구성 정관 및 신청서의 사본과 함께 통지한다. 통지가 발송된지 15일 이내에 또는 퀘벡협동조합연합회가 응답을 하는 즉시, 장관은 만약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연합회의 연맹을 구성할 수 있다. 두 개의 연합회는 연맹을 설립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조합원이 유사하거나 관련된 목적을 가진 연합회를 하나로 둑는 연맹은 하나 이상 설립될 수 없다. Title I 및 III는 필요한 수정을 통해 연맹에 적용된다.

(5) 규정 : Title V¹⁰⁰

본 법의 시행으로 인해, 협동조합을 설립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government)에 필요한 규정들을 제정할 것을 명령한 규정이다. 그러한 규정들로 ① 문서의 작성 및 검토 또는 이 법에 따라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설명, ② 이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문서를 등록하는 방법과 이 문서의 보관 방법의 결정, ③ 조합, 연합회 또는 연맹의 정관에 명시된 명칭에 대한 표준, 용어 및 조건 및 자신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의 결정, ④ 재무제표의 형태와 취지, 감사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기준의 결정, ⑤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양에 따라 감사에 관한 특정 요구사항, 감사인 보고서, 감사인 자격요건 및 재무제표의 성격, 형태 및 시행자의 결정, ⑥ 제128.1조의 목적상,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그 보조 회원이 함께 수행해야 하는 사업비율을 결정하고, 어떤 형태(class)의 협동조합의 구성을 위해 가능하다면, 211.5조의 목적상 “business”라는 단어의 의미의 정의, ⑦ 제128.1조의 목적상 “자회사(subsidiary)”라는 단어의 의미의 정의, ⑧ 제146조의 목적상 “부채(debts)”라는 단어의 의미의 정의를 정해야 한다.¹⁰¹

(6) 지속 : Title VII

Title VII에서는 지속(Continuance)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업법인,

⁹⁹ section 241–243.

¹⁰⁰ section 244–245.

¹⁰¹ section 244.

법인, 협동조합이 성격에 맞게 해당 단체의 유지 존속을 희망할 경우, 내부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속할 수 있게 허가해주고, 본 협동조합법의 적용을 통해 관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지속의 종류로는 ① 회사법 제3부에 의해 규율되는 기업 또는 법인으로서의 협동조합의 지속, ② 협동조합으로서 사업법인의 지속, ③ 회사법 제3부에 의해 규율되는 협동조합으로서 법인의 지속, 3가지를 들고 있다.

회사법 제3부에 의해 규율되는 기업 또는 법인으로서의 협동조합의 지속은 이 법 제188조에 따라 해산될 책임이 있는 협동조합은¹⁰² 기업법(Chapter S-31.1)에 의해 지배되는 사업 법인(기업) 또는 회사법(Chapter C-38) 제3부에 의해 규율되는 법인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협동조합은 지속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장관에게 허가받은 후 해당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¹⁰³

협동조합으로서 사업법인의 지속은 기업법(Chapter S-31.1)이 규율하는 사업법인은 본 법에 따라 해당 사업체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으로서의 사업체(기업)의 지속은 기업법 298조(S-31.1장)에 따라 주주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¹⁰⁴

회사법 제3부에 의해 규율되는 협동조합으로서 법인의 지속은 회사법 제3부(Chapter C-38)에 의해 규율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라 지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⁵

IV. 시사점 및 결론

퀘벡의 사회적경제법은 17개의 조문 가운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장관 및 정부부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회에 본 법안을 제출했을 당시 본 법안을

¹⁰² 제188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장관은 연차보고서를 검토한 후, 조합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면, 이사회가 특정 시간 내에 장관의 권고사항에 따라 협동조합 준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준수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못하거나, 규정된 시간 내에 장관의 만족도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장관은 조합이 책임지는 채무 불이행과 벌금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만일 조합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기업법(S-31.1장) 또는 회사법 제3부(C-38)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지속할 것을 요구한 후, 협동조합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을 해야 하는 협동조합을 가리킨다.”

¹⁰³ section 257.

¹⁰⁴ section 263.

¹⁰⁵ section 269.1.

설명하는 주석(Explanatory Notes)을 살펴보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는 조문이 많은 이유를 알 수 있다. 주석의 첫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퀘벡 주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사회적 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해당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다.”¹⁰⁶ 이를 통해 본 법안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여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 정책 수단의 생성과 적응을 통해 그 발전을 지원하며, 사회적 경제 기업에 관한 행정부의 조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자립성을 강화하여 이렇게 성장하여 자립한 기업들이 진정한 경제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는 결국 정부의 역할이란 점을 인식하고 만든 규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제3조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의에서 ‘사회적 목적’의 강조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밝히면서, 사회적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3조 끝부분에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목적의 핵심은 첫째 금전적 이익을 중시하지 않음, 둘째 구성원과 공동체에 대한 봉사, 셋째 구성원의 복지향상 및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가지를 들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법 제 제정 시 충분히 고민해 봄해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체가 해산될 경우 해당 기업의 잔존재산은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법인으로 양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 규정은 사회적 경제라는 틀 안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목적에 따라 운영했던 재산이 사회적 경제 외의 다른 영역으로의 이탈되는 것을 막아 다른 사회적 경제조직이 해산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산을 다시금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규정이다.

퀘벡의 협동조합법은 조문이 330개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개정 단계마다 새로이 추가되는 하위 조문까지 합치면 400개가 훌쩍 넘는다. Title 1과 Title 2가 전

¹⁰⁶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object of this Act is to recognize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conomy to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Quebec and to determine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at area.”

체조문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 케벡 협동조합법의 핵심 파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에는 없는 주목할 만한 점들이 몇 개 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라 해도 만 14세 이상이면 협동조합의 설립자, 조합원, 이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관련 규정이 없다. 또한 협동조합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서 주식회사의 주식처럼 보통주, 우선주, 참여우선주를 각각 두어 해당 주식에 따라 권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준조합원과 비슷한 제도로, 보조조합원 제도를 두어 이들 역시 조합원에 준하게 처우를 해주고 있다. 총회에서의 투표권과 관련하여 대리투표를 인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와 달리, 1년 이상 함께 거주했을 경우 법률상 이 아닌 사실인 배우자도 포함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성 배우자가 아닌 동성 배우자도 배우자로 포함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사의 자격가운데 금융서비스조합에 관한 법(Chapter-67.3)에 의해 규율되는 금융 서비스 조합이나 이 법에 의해 규율되는 연합회 또는 연맹은 비록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단체(group)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본 조에 따라 ‘단체(group)’가 될 경우 이사가 될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협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수입이 창출하여 잉여(surplus)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배분 및 처리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점, 예비비 및 강화예비비 제도를 두어 협동조합의 운영상에 있어 재정을 튼실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또한 협동조합이 본 법에 따라 장관이 시정할 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 협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 해산 후 협동조합 재산의 CQCM으로의 귀속을 다루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협동조합의 종류를 크게 5가지로 하여 법에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생산자 협동조합 중 농업협동조합이 본 법에서 규율된다는 점이 우리와 많이 다른 점이었고, 협동조합 가운데, 주주 노동자 협동조합(Shareholding Workers Cooperatives)과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은 우리에게 생소한 협동조합으로 이에 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⁰⁷

¹⁰⁷ 연대협동조합의 경우, 이른바 다중이해관계협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사용되면서, 일부 몇 가지 비슷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나, 케벡과 같이 보편적이고 널리 퍼져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퀘벡의 사회적경제법과 협동조합법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발전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법적 재정적 지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법들은 관련 경제주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중심을 관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정부 및 관련 각부 장관들의 역할이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정부와의 원만한 교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해 주기 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Chantier)와 퀘벡협동조합상호부조위원회(CQCM)를 사회적 경제 분야 교섭단체(interlocutor)로 정해 사회적 경제조직체의 발전과 보호를 동시에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퀘벡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경제 주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30여년 만에 눈부신 성과를 도출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분야에서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면서, 지역선순환경제의 구축과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경제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그 빛을 보려면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적극적인 지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퀘벡의 경험을 통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창진, “캐나다 퀘벡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협동조합네트』 통권 60호,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 연구소, 2013

충남발전연구원, 『캐나다 퀘벡주 협동조합 조사보고서(안)』, CDI 해외연수자료집(2013), 2013

홍선기, 김태환, “캐나다 퀘벡의 Social Economy Act와 한국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비교”, 『법학논총』 Vol.32 No.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6

보도자료, 2017.10.18.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18.7.3.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신문기사,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767>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ejlaw24&logNo=220656621441>

퀘벡 입법정보, <http://legisquebec.gouv.qc.ca/en/showdoc/cs/E-1.1.1>